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지권 의원 (대표)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2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정지권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상훈, 이은주, 이승미, 정진철,
경만선, 김동식, 노식래, 이현찬,
성중기 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간 일어나는 차내 안전 사고 및 차 내·외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11조제2항 중 “지속적인 점검을 해야”를 “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지속적인 점검을 해야”를 “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1조(안전운행 방안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<u>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| <p>제11조(안전운행 방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--.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1조 제2항에서 시내버스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하고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시내버스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하고 있는바, 조례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박종철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c99@seoul.go.kr